

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1. 26(금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4. 12. 01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4. 12. 23(목)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12. 23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지역도시과장 박현창)

가. 제안이유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의 제정목적 및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규정함.(안 제2조)
-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기준 및 규모에 관하여 규정함.
(안 제5조 내지 6조)
-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, 지정절차 및 고시에 관하여 규정함. (안 제8조 내지 10조)
-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·고시내용의 변경제한 및 시설지원에 관하여 규정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써, 적정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
 -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에 있어 지정시 고려사항, 지정기준, 지정규모, 계획수립, 주민의견수렴, 지정절차등의 조례안은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별법령에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등을 준용하여 마련이 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이며,
 - 안 제12조(시설지원)은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원을 평창군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업시설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기타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